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0. 4.

담양군의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분노수집·운반업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함으로써 악취민원 등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(안 제7조제1항 변경)

나. [별표 29] 환경·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

제2호가목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 신설(분노수집·운반업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0. 4 ~ 10. 9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)

2.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

3.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

별표 29 제2호가목 대상시설란 중 6)폐차장란을 7)폐차장란으로 하고 5)가축분뇨관련영업란 다음에 6)분뇨수집·운반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)분뇨수집·운반업(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영업) [하수도법 제45조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 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(다만, 분뇨 수집·운반업 시설 중 사무실은 제외)
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·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1.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) 2.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3.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29] 2.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 가.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은 다음표와 같다.			[별표 29] 2.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 가.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은 다음표와 같다.		
대상시설	거리제한	비고	대상시설	거리제한	비고
(생략)	(생략)		(생략)	(생략)	
4)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[한국표준산업분류 C2031. 통계청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 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 거리 1,500m이내(다만,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 시설 중 사무실은 제외하고, 차고는 200m이내)		4)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[한국표준산업분류 C2031. 통계청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 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 거리 1,500m이내(다만,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 시설 중 사무실은 제외하고, 차고는 200m이내)	
5)가축분뇨 관련영업(재활용신고등) [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제28조]			5)가축분뇨 관련영업(재활용신고등) [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]		
6)폐차장 [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 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 거리 1,000m이내		6)분뇨수집·운반업(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영업) [하수도법 제45조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 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 거리 200m이내(다만, 분뇨 수집·운반업 시설 중 사무실은 제외)	
			7) 폐차장 [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]	가)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 취락, 관광지, 공원, 국가유산, 유적지, 정온시설(공공시설, 학교, 병원, 사찰) 등의 경계에서 직선 거리 1,000m이내	